「2027년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공급사업(소외지역형)」 사업설명회 주요 질의응답

('26.10.26., 한국과학창의재단)

< 목 차 >

Ⅰ. 사업 및 공모 신청 관련

Ⅱ. 프로그램 운영 및 실적 관련

Ⅲ. 프로그램 구성 및 X+AI 프로그램 운영 관련

Ⅳ. 소외지역 기준 관련

Ⅴ. 사업비 집행 관련

Ⅵ. 프로그램 유상 공급 및 계약 관련

Ⅰ 사업 및 공모 신청 관련

1.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?

☞ 신청기관 단독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,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.

2. 대학은 총장 명의와 산학협력단장 명의 중 어느 명의로 신청해야 하나요?

☞ 별도의 제한은 없음. 대학에서 판단하여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신청할 수 있음.

3. 한 대학에서 두 명의 사업책임자가 각각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?

☞ 사업 신청은 기관 대표자 명의(대학의 경우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)로만 가능하며, 동일 기관 내 중복 신청은 허용되지 않음.

※ 한국과학창의재단 과제관리시스템(https://pmsnew.kosac.re.kr)에서 사업 신청시에는 사업책임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신청 필수

4. 유사 사업 수행 경험에 대한 별도의 가점이 있나요?

☞ 유사 사업 수행 경험에 대한 별도의 가점 항목은 없음. 다만, 기관 역량 평가 과정에서 참고될 수 있음.

5. 사업 선정 후 협약체결 시 대학도 선금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계약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 하나요?

☞ 대학은 선금이행보증보험증권 면제 대상이므로 발급받지 않아도 됨.

Ⅱ 프로그램 운영 및 실적 관련

1. 공급목표 중 7,200차시는 학기당 기준인가요, 연간 기준인가요?

☞ 학기당 기준이 아닌 연간 총 7,200차시 기준임.

2. 선택형 프로그램의 공급목표 1,440차시는 7,200차시와 별도의 실적인가요?

☞ 선택형 프로그램의 1,440차시는 전체 7,200차시에 포함되는 실적임.

3. 동일 학교의 동일 학급을 연간 운영하면 학기별로 실적이 인정되나요?

☞ 동일 학교의 동일 학급을 1·2학기에 연속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각 학기의 공급실적으로 각각 인정함

※ (예시) 동일 학교의 2개 학급을 각각 1학기 42차시, 2학기 30차시씩 운영한 경우, 1학기 2학급·84차시, 2학기 2학급·60차시의 공급실적으로 각각 인정

4. 방학 중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나요?

☞ 방학 중 운영에 대한 제한은 없음.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방학 중에도 운영할 수 있음.

5. 학교 요청에 따라 한 학기 운영 차시를 36차시보다 늘리거나 줄일 수 있나요?

☞ 학교 요청에 따라 한 학기 운영 차시를 조정할 수 있음. 예를 들어 36차시를 기준으로 하되, 학교 요청에 따라 40차시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함.

6. 한 학교에 여러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나요? 최대 개수는 몇 개인가요?

☞ 1개 학교당 운영 가능한 프로그램 수와 세부 기준은 추후 마련되는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운영해야 함.

Ⅲ 프로그램 구성 및 X+AI 프로그램 운영 관련

1. 프로그램은 몇 종 이상 제시해야 하며, 같은 분야에 여러 종을 구성할 수 있나요?

☞ 맞춤형 프로그램 5종 이상, 선택형 프로그램 2종 이상 등 총 7종 이상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제시해야 함. 특정 분야에 여러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, 분야별로 균형 있게 확보하는 것을 권고함.

2. X+AI 프로그램은 반드시 2종만 구성해야 하나요?

☞ X+AI 프로그램 2종은 최소 기준이므로, 2종을 초과하여 구성할 수 있음.

3. 사전 준비가 된 X+AI 프로그램을 2027년 1학기부터 운영해도 되나요?

☞ 사전 준비가 된 경우 2027년 1학기부터 운영할 수 있음. 다만, X+AI 프로그램 공급목표(15개교 이상) 달성 여부는 2027년 2학기 공급실적을 기준으로 판단함.

Ⅳ 소외지역 기준 관련

1. 소외지역 공급목표 50%는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?

☞ 학급 수를 기준으로 산정함. 같은 학교의 여러 학급도 각각 별도의 학급으로 계산함.

2. 특수학급을 운영하면 소외지역 학급으로 인정되나요?

☞ 특수학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외지역 학급에 포함되는 것은 아님.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소외지역 기준에 해당해야 함.

3. 교육복지우선대상학교도 소외지역 기준에 포함되나요?

☞ 2027년부터 교육복지우선대상학교는 소외지역 기준에서 제외되었고 특수상황지역, 인구감소지역/관심지역이 추가됨.

❖ **소외지역 기준**

① 읍·면 지역 : 학교 소재 주소지 기준
② 도서·벽지: 도서지역 97개, 벽지지역 359개, 접적지역 102개(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」 제2조)
③ 특수상황지역 : 접경지역 15개 시·군(「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」 제21조), 섬지역 21개 시·군·구 188개 섬(「섬발전촉진법」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)
④ 인구감소지역/관심지역 : 감소지역 92개, 관심지역 18개(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)

※ 소외지역 기준은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에 따른 최신 지정 현황을 기준으로 하며, 법령 개정 및 지역 재지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V 사업비 집행 관련

1. 사업책임자도 사업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?

☞ 사업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인력에게 사업 참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.

2. X+AI 프로그램은 재료비 기준이 완화되나요?

☞ X+AI 프로그램에 대한 별도의 완화 없이 2026년 사업 기준과 동일한 재료비 기준이 적용됨.

3. 유상공급 과정 강사의 여비와 고용·산재보험료를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나요?

☞ 유상공급 과정 강사의 여비와 고용·산재보험료 모두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음.

4. 프로그램 공급비로 국내외 AI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거나 구독할 수 있나요?

☞ 사무용 SW는 사업기간 내 구독비 집행은 가능하나 영구 라이센스 취득은 불인정함

Ⅵ 프로그램 유상 공급, 계약 및 기타

1. 사업계획서 양식의 '수강료 지불 시스템 구축'은 무엇을 의미하나요?

☞ 유상 프로그램 운영 시 학교가 수강료를 원활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수납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함.

2. 유상 공급 수강료 항목 중 수용비는 무엇인가요?

☞ 인쇄비, 공공요금, 자원봉사자 활동비 등 강사료와 별도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, 프로그램별 강사료의 5% 이내로 책정 가능함.
(출처 :「2026년 초등돌봄·교육(늘봄학교) 운영 길라잡이」)

3. 늘봄허브에서 매칭된 이후에도 학교와 공급기관이 별도로 계약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?

☞ 학교에서 강사료 등을 강사 또는 공급기관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식으로는 개인위탁(학교가 공급기관 소속 강사와 계약 체결)과 기관위탁(학교와 공급기관이 계약 체결) 형태가 있음. 위탁 계약시에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계약을 진행해야함.

4. 공급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체 연수 외에 방과후 강사가 참여할 수 있는 다른 연수가 있나요?

☞ 전국의 모든 방과후 강사는 공급기관 기관 자체 연수 외에도 강사 연수 운영기관(전국 10개 교육대학교)에서 주관하는 강사 연수와 한국과학창의재단 방과후·돌봄교육 사업추진센터에서 운영하는 원격연수에 참여·이수할 수 있음.